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821호(號) 1933(昭和 8)년 2월 4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9호(號)

1929(昭和 4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09호(號)(조선총독부 철도국선[朝鮮總督府鐵道局線], 철도성선[鐵道省線] 간[間] 및 조선총독부 철도국선[朝鮮總督府鐵道局線] 또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선[朝鮮總督府鐵道局線] 및 신농철도주식회사[信濃鐵道株式會社] 경유[經由]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[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]·철도성선[鐵道省線] 간[間] 화물연대운송규칙[貨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2월 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제2호(號) 만철(滿鐵)의 행(行) 중(中) 「단동역(安東驛)」을 「단동역(安東驛), 다롄역(大連驛)」으로 개정(改正)함.